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 - 1638호

「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 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국토교통부 장관

「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물류창고업 등록이 가능한 물류창고(보관시설)을 창고시설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주문배송시설까지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물류창고업 등록이 가능한 물류창고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에 따른 창고시설에서 같은 별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주문배송시설까지 확대(안 제3조제4항제3호)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교통물류실 첨단물류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안에 대한 의견 및 사유(필요 시 수정안 제출 가능)

나. 성명(법인·단체는 단체명 및 대표자명 포함),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첨단물류과

- 전자우편 : artisan132@korea.kr

- 팩스 : 044-201-560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첨단물류과(전화번호 044-201-4013,

400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